#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백혜련·김영진·민병덕

한민수 · 김한규 · 김준혁

염태영 • 이재정 • 김승원

박성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 단지를 조성·육성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 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첨단연구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정의함(안제1조 및 제2조).
- 나.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이하 "지원처장"이라 한다)는 첨단연

구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성·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 년 단위로 첨단연구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 신기술 등 교육·연구기능이 융합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육성이 시급한 산업을 첨단연구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라. 지원처장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원시장 및 화성시장 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함(안 제8조).
- 마. 지원처장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처장의 승인을 받도록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두고, 지원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함(안 제14조).
- 사.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둠(안 제15조).
- 아.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시설 조성 및 구축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

면, 조성토지의 원가 이하 공급,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수도권 총량규제 완화,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지원방안을 마련함(안 제4장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해 국내·외 우수 기업·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첨단연구산업"이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교육·연구기능이 융합된 특 화단지 조성을 통한 육성이 시급한 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 된 산업을 말한다.
- 2. "첨단연구산업단지"란 첨단연구산업 관련 교육·연구·산업시설 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처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 3. "종전부지"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에 소재한 군 공항이 위치한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 4. "종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종전부지와 연계 개발이 필요한 인근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 구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육성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 발사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 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 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 개발

제6조(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제14조 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이하 "지원처장"이라 한다)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성·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 2. 첨단연구산업단지 내 첨단연구산업에 대한 동향 및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 3. 용지조성계획 및 공간구조계획
- 4. 기반시설 확충계획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5.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 6.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개발·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원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후 제15조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첨단연구산업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교육·연 구기능이 융합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육성이 시급한 산업을 첨단

- 연구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처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연구산업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처장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첨단연구산업의 지정, 제2항에 따른 첨단연구산업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첨단연구산업단지의 지정) ① 지원처장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원시장 및 화성시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조성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국가첨 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 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신청의 절차·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첨단연구산업단지의 지정 해제) ① 지원처장은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개발) ① 지원처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종전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첨단연구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개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단계적 조성·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원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 1. 국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 ② 지원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첨단연구산업단지의 효율적 조성·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제11 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개발의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② 지원처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지원처장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전에 시행계획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부터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지원처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지원처장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2.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 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7.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1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 시사용허가·신고

- 1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 1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 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제3장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지원기구

제14조(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 ①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이하 "지원처"이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처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③ 지원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④ 지원처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 ①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 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개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 위원회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첨단연구산업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ㆍ지정ㆍ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개발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지원처장
- 3. 경기도지사
- 4. 수원시장
- 5. 화성시장
- 6. 첨단연구산업의 육성·보호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지원처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지원 방안

제16조(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1.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 2.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개발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 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1. 제12조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육성 사업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영활동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 원할 수 있고,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 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
  -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 준·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지원처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0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사업 시행자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

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있다.

- 1. 외국인투자기업등
- 2. 관련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개인
- ③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 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 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 ③ 국가는 내국인이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설립되는 외국교육 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 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다.
- ⑤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있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⑥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서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22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 1.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일 것
  -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첨단연구산업단지에 개설된 외국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 ①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 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
- 제2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의 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첨단연구 산업단지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4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 사·수원시장 또는 화성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 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중 학교를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

- ·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이전,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21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정한다.
- 제2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 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26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등

- 제27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지원처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개발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개발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 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 제30조(과태료) ①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 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